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07호 2020. 8. 26.(수)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20-19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20-969호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4
- 의령군 공고 제2020-977호 소하천(화촌)구역의 결정(폐지)을 위한 주민 등 의견
청취 열람공고 10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 - 19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과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의령군수

○ 도로명주소 :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 373-79 등 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055-570-2440)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 부여사유
1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403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 373-79	'20. 8. 26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구역 재조정 전 불리던 옛지명인 덕암면에서 유래
2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976-1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1길 77-38	'20. 8. 26	기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 로 분기되는 도로
3	의령군 부림면 단원리 755-2	의령군 부림면 단원로1길 71-5	'20. 8. 26	단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 로 분기되는 도로
4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150-4	의령군 용덕면 소상로4길 30-17	'20. 8. 26	소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 번째 로 분기되는 도로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경상남도)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령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하지 못한 교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의 령 군 수

1. 공 고 명: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8. 24. ~ 2020. 9. 8.(16일간)
3. 공시송달 효력발생 시기 : 2020. 8. 2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근거법령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행정명령 재교부 및 문의 : 의령군 문화관광과(☎055-570-2505)
7.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같은 법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교 회 명	대표자	주소(읍면)	비 고
1	칠 곡 교 회	윤*수	칠곡면	
2	대 의 교 회	성*용	대의면	
3	모 의 교 회	이*용	대의면	
4	낙 서 교 회	이*삼	낙서면	
5	에텐동산교회	박*힘	궁류면	
6	방 주 교 회	남*연	유곡면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소재 모든 교회
2. 처분내용 :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함.
※ 2020.8.22 일자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09호 행정명령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 및 장로 소속 교회 등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은 **유지함**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8:00부터
7. 처분 담당자

이름	소속	직급	비고
노혜영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	지방기술서기관	055-211-4960
신동현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	지방보건사무관	055-211-4972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

참 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서

1. 경상남도는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2020. 8. 23.(일) 08:00시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소재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합니다.

※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

2. 이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의 전파 차단을 위함입니다.

3.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경 상 남 도 지



소하천(화촌)구역의 결정(폐지)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열람공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26

의령군수

1. 공고개요

- 공고내용 : 소하천구역의 결정(폐지)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 공고대상 : 화촌천(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일원)
- 폐지 소하천 조서

수계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칠곡천	화촌천	칠곡면 외조리 467	칠곡면 외조리 530	1,290	의령 리온컨트리클럽 조성사업으로 인한 소하천기능 상실로 폐지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0. 08. 26 ~ 2020. 09. 09(열람시간 : 09:00 ~ 18:00)
- 열람장소 : 의령군 안전관리과, 칠곡면사무소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열람기간 이내
- 제출장소 : 열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을 이용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하천담당(055-570-3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 램 의 건 서

열람건명	소하천(화촌)구역의 결정(폐지)		접수번호	
			접 수 일	2020. . .
열람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연락처			
토지소재지	위치 및 면적			
	기타사항			
열 램 의 건				
<p>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화촌)구역의 결정(폐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2020년	월
			일	
의령군수 귀하			신청인	(인)